

[ ]주택관리사 자격증  
[ ]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 )	
	근무처		
주택 관리사(보)	자격증(합격증) 번호	제 호(발급 시·도: )	
	취득일	년 월 일	
재발급 신청사유			

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(합격증서)을 재발급 받고자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1조제4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사진 3.5cm×4.5cm(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)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시·도(주택관리 담당부서)

#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교부

▣ 관련법규 : 주택법 제56조 제2항

## 1.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

가.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

1) 종류

① 신청서

② 실무경력 증빙자료(재직 또는 경력증명서, 4대보험가입증명서, 근로소득증명원)

③ 사진 2매(3cm × 4cm)

2) 제출처 및 처리기간

제출처	처리기간
도민원실	7일

## 2. 업무처리 흐름도

